계좌간자동이체약관

제 1 조 자동이체 방법

① 은행은 거래처의 자동이체 신청에 따라 지정일에 통장, 수표, 지급청구서 없이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(영업시간 이내 입금분에 한합니다)을 입금 계좌로 이체합니다.

② 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합니다. 다만, 정기예금 및 신탁 월지급이자는 그 전영업일에 이체합니다.

③ 통장자동대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포함하여 이체합니다. 다만, 고객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금잔액 이내에서만 이체 할 수 있습니다.

제 2 조 지급자금 부족 때의 처리

이체 지정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(영업시간 이내 입금분에 한합니다)합니다.

제 3 조 여러 건의 이체처리

같은 날에 이체대상이 여러 건 있는 때 이체처리순서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.

제 4 조 증권의 부도

거래처의 출금계좌에 입금한 자기앞수표, 가계수표 등 증권이 지급 거절되었을 때는 자동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합니다.

제 5 조 신청내용의 변경, 해지신고

거래처가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이체지정일 전영업일까지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.

제 6 조 이체일 및 이체금액 미지정 때 처리

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, 채무 등 이체대상만을 지정하고 이체일 및 금액에 대한 지정없이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는 은행은 그 대상거래가 발생했을 때 이체합니다.

제 7 조 은행의 자동이체 임의해지

6개월이상 이체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이체 등록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.

제 8 조 외화예금 자동이체 적용환율

원화계좌에서 외화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이체처리일 이체시점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.

제 9 조 적립식 간접투자상품 자동이체 처리

① 입금계좌가 간접투자상품인 경우 지정일에 출금계좌에서 이체금액에 대해 지급제한을 하고 다음 영업일에 이체합니다.

② 지급자금 부족시 제2조를 준용하되, 신규 또는 자동이체 신청시 별도로 고객이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월 이체일에 처리합니다.

제 10 조 준용

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,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, 각 상품의 개별약관 및 은행규정을 적용합니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제9조 적립식 간접투자상품 자동이체 처리는 2008년 11월29일부터 시행합니다. 다만, 9조②항. 지급자금 부족때의 별도 처리절차는 2009년 1월5일부터 적용합니다.